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박상혁 · 김우영 · 진선미
김승원 · 김한규 · 한병도
전현희 · 한민수 · 이연희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과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첨단전략산
업기금이 소유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신 설)</u>	<u>4의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소유하는 경우</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